입법동향 – 2025년 제6호

#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차 례


##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7
2.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 18

##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건축법」 일부개정 ····· 23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27

##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 35
2.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 44

##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59

##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경기도의회 갑질 조례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65
2. 비영리법인의 수산자원 포획기준등을 시장 등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가능 여부 ····· 68

## Ⅵ. 법령 해석 사례

1.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관련 정보공개 시 통지절차 반드시 준수 여부 ··· 77
2. 사원과 지리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사원 경내 해당 여부 ····· 80

#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 1 【전부개정】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6. 12., 경상남도조례 제5862호, 2025. 6. 12., 전부개정】

### □ 상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 전부개정이유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와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 규정함(제8조).
나.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함(제9조).

### □ 타 시·도 제정 현황: 16개 시·도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중항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 **악성민원**: 총 2,784명
- **민원유형**: 지속적 문자발송, 폭행·협박, 무기로 위협 등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회는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업무 담당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관련 조례를 2025년 전부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반면, 우리 도의 경우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미 개정으로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0. 29. 개정·시행) **개정 사항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조문 또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안전하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br>2.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자<br>3. 「청원경찰법」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직원을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 |
|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제6조(지원사항 등)<br>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br>1. 심리상담<br>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br>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br>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의 지원<br>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br>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br>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항)<br>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br>1. 상담지원<br>2. 의료비<br>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br>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br>5.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br>6.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br>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제7조(지원 신청·결정)<br>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br>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br>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

|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에는 최종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br>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br>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br>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br>2. 녹음전화 운영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br>3. 민원실 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br>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 제공<br>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br>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제9조(보호조치)**<br>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 |

|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폭언·폭행<br>2.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br>3.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br>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br>②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야 한다.<br>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통화 또는 면담을 길어도 1회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에는 종료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
| **제10조(법적대응 등)**<br>① 도지사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 |

|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해야 한다.<br>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br>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고소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④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11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행하는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 **제12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도지사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2 【제정】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5., 경상남도조례 제5841호, 2025. 5. 15., 제정】

###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 제정이유

◇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양을 활성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 □ 주요내용

가.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제5조～제6조).
다. 보호시설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8조).

### □ 타 시·도 제정 현황: 경북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만2천825마리로 2022년 대비 반려견은 8천644마리(10.4%), 반려묘는 348마리(82.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내·외장형 인식칩이 등록된 반려동물 기준

○ 2023년 도내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신고 및 구조는 9천84마리로 확인**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으며, **전국적으로** 유실·유기된 동물의 **신고건수가 2022년 대비 0.3% 감소**하였음에도 **전북은 3.5% 증가**하였음.

○ 현재, 우리 도는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 시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임.**

#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9., 경상북도조례 제5271호, 2025. 5.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입양”이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법 제4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양인의 가정으로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도지사는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분양·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도지사는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분양·기증 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증**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도민이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비용
2. 중성화수술비용
3. 동물예방접종 및 질병 진단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입양자당 연간 2마리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호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보호, 유실·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2.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3. 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시행 2025. 6. 5.,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68호, 2025. 6. 5., 제정】

### □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정이유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은 **학업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5조).

다. 신고체계 및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9조～제10조).

###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7곳(강원, 경남, 경북, 서울, 세종, 울산, 인천)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며, 유형 또한 언어폭력, 성폭력, 명예훼손, 딥페이크 등 다양화되고 있어 사이버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4년 **도교육청에 접수된 사이버폭력 건수는 총 97건**으로 도교육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퇴직경찰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21명의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사이버폭력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시행 2025. 6. 5.,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68호, 2025. 6. 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 1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 2025. 6. 2.,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상위법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현 행 | 개 정 |
|---|---|
| <신 설> |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br>① ~ ⑨ (생략)<br>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우리 도는 상위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 근거하여 건축안전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대 중점과제와 8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음.(2024년 기준)

**【3대 중점과제】**

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원강화 ②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③ 지역건축안전센터 조기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개 실천과제】**

① 도 승인대상 건축물 설계도서 건축기준 검토 및 안전점검 강화
② 민간 건축공사장 합동 컨설팅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유도
③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④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적기 명부 작성·관리 등 지원
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 지원
⑥ 전문성 제고를 위한 건축안전자문단 구성·운영
⑦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및 소통 간담회 정례회
⑧ 시·군 담당 공무원 전문 역량강화 교육 및 기술 지원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과 관련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센터의 역할만을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역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3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생략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설치) ~ 제14조(수당과 여비) 생략

제3장 전문위원회

제15조(비밀준수) ~ 제20조(준용) 생략

제4장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등 [본장 신설 2016. 12. 30]

제21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제23조(업무의 위탁) 생략

**제5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제24조(전북특별자치도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1. 7. 9.]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계획 및 재난대비 안전대책의 수립과 점검 및 지원(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
4.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5.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7.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 안전 등 검토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2 【일부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79호, 2025. 4. 29., 일부개정】

## □ 제정이유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현 행 | 제 정 |
|---|---|
| <신 설> | 제7조의4(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br>① ~② (생략)<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받도록 하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 **자체 계획에 따라 검토**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임.

○ 우리 도는 문화 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각각 26곳과 6곳을 운영**하고 있음.(2025년 기준)

○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진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제7조～제8조)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에는 **상위법령에서 완화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도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완화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법인·단체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법인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 하였을 때 지원해지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 1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10호(통권 제273호), 조경희】**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關連技術の研究 開發及び活用の推進に關する法律)」 (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나, 제3장(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4장(인공지능 전략본부)은 3개월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개발과 활용 추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기존 법률의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협력의무만을 부과하고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으며, 정부가 조사, 지도 및 자문을 통해 **인공지능 위험성을 관리하는 '일본형 규율 모델'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 지능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 중이다. **인공지능산업이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현재,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 및 정책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주제어** 인공지능, 인공지능산업,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업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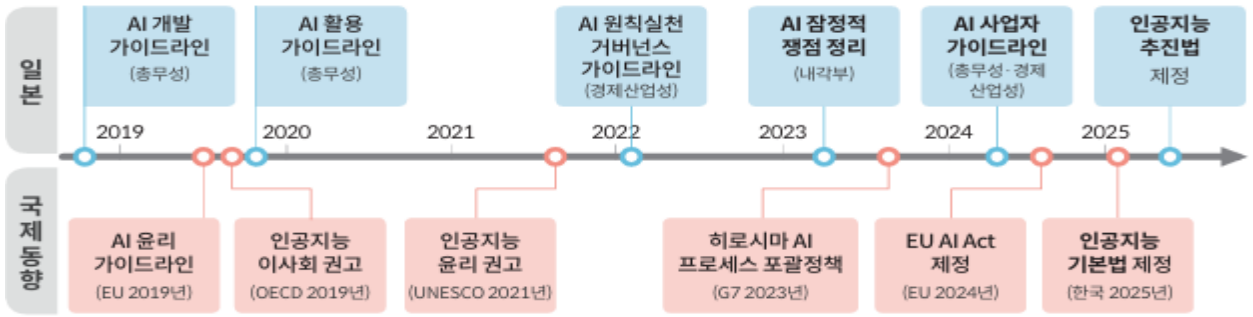
## □ 도입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인공지능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자율규제**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 2023년 5월, 일본 내각부 산하의 **'AI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의 과제를 검토하여 **'AI 잠정적 쟁점 정리'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가 그간 마련해온 **여러 AI 가이드라인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통합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자율적으로 대응 조치 취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 2024년 7월, 현행 지침과 개별 법률만으로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인공지능 관련 인식조사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AI 전략회의 내에 'AI 제도연구회'를 설치**하고 2025년 2월 **'AI 제도 중간 정리'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추진법」을 2025년 6월 4일 제정·공포**하였다.

그림 1 인공지능 관련 일본 법제도 정비와 국제동향 경과




출처: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재구성

## □ 일본 정부의 AI제도 정비 경과 및 내용

### 1. AI 전략회의 ‘AI잠정적 쟁점 정리’

❍ ‘AI 잠정적 쟁점 정리’에서는 인공지능 라이프사이클(개발·제공·이용)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잠재적 위험] 인공지능과 관련된 7가지 위험 요소**로 기밀정보의 유출과 개인정보 오남용,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 가짜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가능성, 교육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 문제, 저작권 침해 우려, 실업 증가 우려를 지적하였다.

- **[인공지능정책 기본방향]**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위험성 대응]** 인공지능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정부 등이 개입**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개발자와 제공자**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법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위험성 감소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사회적 활용 확대]** 의료, 행정, 교육, 금융, 제조 등 주요 분야에 걸친 데이터 연계 기반 구축, 신뢰 가능한 데이터 유통 구조, 디지털 인재 육성, 스타트업 사업 정비,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개발 인프라 확보]** 인공지능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산자원(computing resources), 데이터 확보, 안정적인 전력 조달 등 필수 **인프라의 정비가 중요**하다.

## 2. 총무성 · 경제산업성, ‘AI사업자 가이드 라인’

❍ 2024년 4월,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본편(공통·사업자별)과 부록(해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세 가지 항목(AI 사업자 공통지침, 고도 AI 시스템 사업자 공통지침, AI 사업자별 준수사항)으로 구분**된다.

❍ **‘AI 사업자 공통지침’은** 모든 인공지능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인간중심)**
- 사람에 의한 조정 가능성의 확보**(안전성)**
- 부당한 차별의 최소화**(공평성)**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대응**(개인정보보호)**
- 시스템의 기밀성 유지**(보안성)**
- 데이터 수집 방식과 알고리즘 작동원리의 공개**(투명성)**
- AI 활용원리 공표**(설명책임)**
- 올바른 인공지능 지식 보급**(디지털교육)**
-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접근 보장**(공정경쟁 확보)**
- 기술혁신을 통한 사회적 기여**(혁신 촉진)**

❍ **‘고도 AI 시스템 사업자 공통지침’**은 최첨단 기반 모델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도 AI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인공지능 **취약점 조사와 대응**
- **위험 기반 정책 수립** 및 공개, **사이버 보안** 강화
- 전자워터마크 등 **식별기술 도입**
- 위험성 완화 관련 **연구·투자 우선**
- 기후위기나 보건 및 교육 등 **공익과제 대응 우선**
- **국제기술표준 개발** 참여
- 인공지능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과 관리**
- 인공지능 관련 **적절·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공개와 투명성 확보
- 산업계·정부·학계 간 **정보 공유와 사고 보고체계 구축**
- 개인정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데이터 입력단계에서 대책** 마련
-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공지능 활용 의무

❍ **‘AI 사업자별 준수사항’은**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각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라이프사이클 전반에서 위험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AI 개발자는 인공지능 모델의 설계 및 변경하는 주체이므로, 인공지능을 제공할 경우에 사회적 영향과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 AI 제공자는 시스템의 구현과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이므로, 보안 대책 및 이용자 지침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적정한 사용을 지원해야 한다.
- AI 이용자는 제공자의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책임을 가진다.

❍ 참고로, 2025년 2월 AI 전략회의(AI 제도연구회)가 발표한 ‘AI 제도 중간정리’에서도 AI 개발자·제공자·이용자를 데이터 수집, 모델 개발 등의 주된 사업자로 보고 있다.

그림 2 인공지능 관련 주요 사업자의 역할




출처: 내각부 AI 전략회의(AI 제도연구회), “AI 제도 중간정리”, p.6

##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과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시책에 대한 기본이념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를 규정한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총 4장(총칙, 기본시책, 인공지능 기본계획, 인공지능 전략본부)과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제1조~제10조)은 법률의 목적·정의·기본이념과 관계자의 책무 및 연계 강화와 법제적 조치 등을 정하고 있다.

- **[목적]**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정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인간의 인지, 추론 및 판단에 관한 지적인 능력을 인공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입력 정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제2조).

- **[기본이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 기술이자 안전 보장상 중요 기술이므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개발력 보유, 적정한 실시를 위한 투명성 확보, 국제적 상호협력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정한다(제3조).

- **[책무]**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기관, 활용사업자, **국민의 책무와 상호 연계**를 정한다(제4조~제9조). 특히, 활용사업자(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제공 및 기타 사업에 활용하는 자)는 정부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도·자문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제적 조치 등]**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및 재정적 조치를 마련**한다(제10조).

❍ **제2장 기본시책**(제11조~제17조)은 국가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적정성을 위한 지침 정비 및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정하고 있다.

- **[국제규범에 부합한 지침 정비]**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침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제13조). 이 조항은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국제규범과 부합하는 시책과 관련하여, 중의원·참의원 부대결의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높이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기존 국내 법제도상 보고의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안**하고 있다.

- **[권익침해 사안 조사 등]**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부적절한 개발 및 활용과 사고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사업자와 국민에게 지도,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제16조).

❍ **제3장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제18조)을 정하고 있다.

- **[기본계획]** 정부는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법률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제18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한다(부칙)

❍ **제4장은** 인공지능 전략본부의 설치(제19조~제28조)를 규정하고 있다.

- **[추진체계]** 인공지능 시책의 종합 추진을 위해 **내각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한다. 본부는 인공지능전략본부장(내각총리대신), 인공지능전략부본부장(내각관방장관, 인공지능전략담당대신), 인공지능전략본부원(본·부본부장 이외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한다(제19조 등).

❍ **[인공지능 전략본부의 특징]**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범정부적인 기구로 특정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본부원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작성 및 실시 사무**와 인공지능 **관련 시책 중 중요한 사항의 기획 및 종합 조정을 담당**하며, **본부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법인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표명,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 요약 및 우리법과의 비교

❍ 일본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추진하는 한편, 그에 따른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업자의 자율 대응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포괄적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공 지능 전략 추진체계, 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여부, 정부 지원방식 등에서 유연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 일본은 「인공지능추진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두 법 모두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 목적, 정의, AI 사업자 의무, 적정성 및 실효성의 확보 조치, 추진체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표 1 인공지능 관련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률 비교

| 구분 |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 | 일본 「인공지능추진법」 |
|---|---|---|
| 법 목적 | 국민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제1조) | 국민생활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제1조) |
| 정의 규정 |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제2조)<br>* 사업자 대상 과태료 규정 있음 | 인공지능 관련 기술(제2조)<br>* 사업자 대상 과태료 규정 없음 |
| AI 사업자 의무 |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명시(제31조~제36조) | 국가시책 협력의무 규정(제7조) |
| 적정성 및 실효성 확보 조치 | ·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 보급(제30조)<br>· 국가의 자료제출 및 조사, 위반행위에 중지·시정 명령(제40조) 및 과태료(제43조) | · 국제 규범에 부합한 지침 정비(제13조)<br>· 국가 조사 및 지도 가능(제16조).<br>· 중지·시정 명령이나 제재 규정을 두지 않음 |
| 추진체계 | · 범정부 기구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위원장: 대통령)(제7조)<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기본계획 수립·시행(제6조) | · 범정부 기구로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본부장: 내각총리대신)<br>· 인공지능 전략본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시행(필요에 따라 수시 변경)(제19조~제26조) |

출처: 법률과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하여 저자 작성

- **법 목적**에 있어, **우리나라는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로 규정**한 반면, **일본은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로 규정**하고 있다. 양국 모두 인공지능을 통한 경제적 진흥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규범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인공지능 관련 추진체계**에서도, **우리나라는 범정부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이를 재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정부 기구인 인공지능 전략본부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AI 사업자에 대한 규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 의무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한 중지나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행정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업자에게 국가 시책에 대한 협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과태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법률**에서 사업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인공지능 기술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공지능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입법적 고려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기본법은** 인공지능 위험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일본 추진법은** 정부가 정보 수집과 사고 조사 등 **간접적인 조치를 통해 개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추천 자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4
- 정준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2327호, 2025
- 参議院, "特集 AI",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立法と調査』 469号, 2024
- 日本国立国会図書館, "AIと社会のこれからを考える", 2025

2

# 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국회도서관, 2025-9호, 통권 제272호, 강명원】

## □ 도입

❍ **우리나라는 1987년 현행 헌법**(1948년 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변화된 국민의 가치관,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2000년 전후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단행**하거나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 독일 등 총 6개국의 개정사항을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누어 기본권의 현대화, 지방분권 실질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유럽 주요국의 개헌 배경 및 내용

### Ⅰ. 개헌배경

❍ 최근 유럽 주요국들은 **국제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99년 남녀의 정치적 평등**과 **2008년 국민의 권리 강화 등에 관한 헌법개정**을 하였고, **핀란드는 1995년에 유럽 인권협약**(Euroopan Ihmisoikeussopimus)에 **부합하도록 헌법 내 기본권 조항을 전면 개정**하였다.

❍ 1993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총 12개국으로 시작한 **유럽연합은 2025년 기준 총 27개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연합 확대로 인해 국가의 기능 일부가 유럽연합에 이양**되자 유럽 주요국들은 **국가의 정체성 및 주권 보전 그리고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 또한, **유럽 주요국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동시에 **민주적 참여 확대, 지역 간 격차 해소, 유럽연합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였다.

❍ 한편, 유럽 주요국은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질적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세대 간 정의와 생태계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요구**받았으며, 동시에 유럽 연합의 공동목표인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에 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 Ⅱ. 기본권 보장 강화

❍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는** 유럽연합 규정 및 유럽 인권협약, 국제 인권협약의 확산 그리고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인권 강화 요구 등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 특히, **프랑스는** 남녀의 정치적 평등 강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도입, 시민 권리 보호관 등을 헌법에 규정하였고, **스위스는** 사회적 기본권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핀란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보장 권리를 규정하였다.

### 1 프랑스

❍ 프랑스는 1999년, 2003년, 2008년 그리고 2024년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 **1999년에는** 공직선거에서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위해 **「헌법」 제1조 제2항을 개정**하였으며, **2003년에는 유럽연합 이사**회 2002년 6월

13일 결정(Décision-cadre du Conseil du 13 juin 2002)에 따라 **유럽 체포영장(Mandat d'arrêt européen)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여 「헌법」 제88-2조에 **유럽 체포영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 **제1조 제2항**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
> **제88-2조** 법률은 유럽연합 조약에 근거한 행위의 적용으로서 유럽 체포영장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 **2008년 전면 개정**을 통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국민이** 경제사회 환경위원회에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반에 걸친 공공정책 문제**에 관해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의 권리향상**을 위해 **시민 권리 보호관(Dédenseur des droits des citoyens)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 **제61-1조**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 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État)나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해당 사항을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6]
>
> **제69조 제3항** 조직법이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의회에 알린다.
>
> **제71-1조** 시민 권리 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한편, 프랑스는 **2024년 개헌을 통해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법률은 여성에게 보장된 임신 중단의 자유가 행사되는 조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스위스

❍ 스위스의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한 **연방 헌법개정은 1999년에 단행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2편 제1장에 **'기본권(Grundrechte)'이라는 표제를 두어 그 아래에 개별기본권을 제7조~제36조에 걸쳐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제12조에 사회권 보장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최소한의 인간적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인 적극적 국가의무를 수반하는 **'궁핍 상태에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Recht auf Hilfe in Notlagen)'를 규정** 하였다.

> **제12조**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조력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핀란드

❍ 핀란드는 1995년 「헌법」 내에 **규정된 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유럽인권협약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 특히 제10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였다.

> **제10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더 세부적으로 규율된다.
>
> **제19조**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삶에 필요한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생계 수단과 필수적인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구체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제2장**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6조부터 제23조에 평등,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불가침, 이동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과 홍보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투표권 및 참여권, 재산 보호, 노동권, 기본권 존중의 보장, 기본권과 예외적 상황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Ⅲ. 지방분권 강화

❍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는 2000년 초** 유럽통합에 따른 국가의 정체성 및 주권 보전, 행정 효율성 및 국민의 민주적 참여 강화, 지역 정체성과 자치 요구의 확산 등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였다.

❍ **프랑스는** 2003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 종류 등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탈리아는 2001년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이외 모든 권한의 지방이양을 규정**하였으며, **스위스는**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을 체계화하고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등을 명시**하였다.

### 1 프랑스

❍ **프랑스는 2003년 공화국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하여 공화국의 **분권화된 조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원의 우선 심의를 규정**하였다.

**제1조** 프랑스는 분할될 수 없고, 정교분리의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중략) 프랑스 공화국의 조직은 분권화되어 있다. (후략)

**제39조** 헌법 제44조 1항[10]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상원 의회에 먼저 제출된다.

❍ 또한, **헌법 제72조 이하에** 보충성의 원칙, 실험적 규정 예외 적용,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 행사 금지, 지방자치단체 유권자의 청원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Régions), 특별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à statut particulier), 해외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d'outre-mer)는 기존에 규정된 시(Communes), 도(Départements)와 함께 헌법에 명시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보충성의 원칙).**

❍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일정한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실험적으로 규정을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특정한 권한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요하는 경우** 법률은 이 중 **1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이 공동활동의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 주민투표나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경우** 그 권한 행사에 조달되었던 **재원의 이양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모든 권한의 신설 및 확대는 법률에서 정하는 재원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2001년**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등을 개정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였다.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주(Regione) 정부에 부여**하여 주 **정부의 교육, 농업, 보건, 세금 분야 등에서의 권한 행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제117조** 대외무역, 노동의 보호 및 인권, 초중등 교육, 보건 보호, 식품, 국토계획, 통신체계, 과학 및 기술 연구, 생산 부문을 위한 혁신지원, 민간 항만 및 공항, 보완적 사회보장제도 등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기본원칙을 정하고 주 정부가 구체적인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8조** 행정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 차등화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능의 통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Comune, 시)에 부여된다. 필요한 경우 도(Provincia), 광역시, 주 정부, 국가에 부여될 수 있다. 또한, 시, 도, 광역시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행정 기능 또는 국가나 주 정부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주 정부, 광역시, 도, 시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또는 협회의 일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장려한다.

## 3 스위스

❍ **스위스의**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연방 헌법개정은 1999년에 이루어져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연방헌법은 주(Kanton)와 기초자치단체(Gemeinde)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도 체계화**하였다. 즉, 주의 자치권에는 **조직상의 자율성이 포함되며 연방은 이러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3조** 주는 연방헌법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향유한다. 주는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제42조** 연방은 연방헌법에 따라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연방은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임무를 행한다.

**제43조** 주는 주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제47조** 연방은 주의 자치를 보장한다.

**제50조** 지방자치는 주 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연방은 자신의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도시 및 과밀지역과 산악지역의 특수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 Ⅳ. 기후위기 대응

❍ 국제적 추세, 시민사회의 요구, 사법부의 판단 및 세대 간 정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규정을 헌법 내 신설**하였고, **프랑스와 독일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스위스의 글라루스주(Kanton Glarus)와 취리히주(Kanton Zürich) 등은 2022년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의 완화 등의 내용을 주 헌법에 신설**하였고, **룩셈부르크는 2023년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관련 개헌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시민사회 단체가 생태 헌법안을 작성·공개**하였다.

### 1 스위스

❍ **스위스의 글라루스주 유권자들은** 2022년 5월 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 헌법에** 기후보호에 관한 조항 **제22a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였다. 이 조항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시)가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제22a조** 주와 지방자치단체(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주, 연방정부 및 스위스가 체결한 국제조약상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기후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환경, 사회, 경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유인책을 마련한다.

❍ **스위스 취리히주 유권자들은** 2022년 5월 15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주 헌법 내 기후 보호 조항(제102a조) 신설에 찬성**하였다. 특히, 이 조항은 **건물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제102a조** 주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스위스가 준수해야 할 연방정부의 목표와 국제조약을 고려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 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며, 도시개발, 건축, 교통, 농업 및 임업, 산업 및 수공업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또한 기후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 자재 및 공정의 개발과 활용을 장려할 수 있다.

## 2 룩셈부르크

❍ **룩셈부르크는 사회·제도적 틀을 현대화하기 위해 2023년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헌법적 가치 목표 중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41조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제41조** 국가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보호를 보장하며, 자연의 보존(특히 자연의 재생 능력과 생물다양성의 보호)과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필요 충족 간에 지속 가능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중립(Neutralité climatique)[14]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는 동물을 감각을 지닌 비인간 생명체로 인정하고 그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힘쓴다.

## 3 프랑스



❍ **프랑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폐기**되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발의된 조문안은 “프랑스는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였으며, **2019년 조문안은 “프랑스는 환경보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한다.”였다.

❍ 이후 **2021년 「헌법 제1조 보완 및 환경보존에 관한 헌법 개정안**(Projet de loi cons titutionnelle complétant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et relatif à 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이 발의**되었다.

❍ **2021년 개헌안은** 1958년 10월 4일 제정된 **프랑스 현행 「헌법」 제1조에 “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원칙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2020년 6월 21일 프랑스 기후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 CCC)가 제안한 149개 권고안 중 하나로, 프랑스 정부는 **기후시민의회가 제안한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이 **개헌안은 의회에서 2차례 심의**되었으나, **상원에서 “보장한다(Garantir)”라는 동사의 법적 효과가 지나치게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개헌안을 거부**하였다. 결국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문안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에 따라 **2021년 7월 6일 헌법개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 4 독일

❍ **독일에서는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KSG)」에 대해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후 2022년 **시민사회단체**인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 (Netzwerk Rechte der Natur)'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 헌법안'을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 생태 헌법안의 **핵심은 자연보호가 일반적인 인격 발현 및 소유권 사용의 전제조건**이며, **자연환경 보호 의무는 국가책임**이라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제안한 생태 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2항** 자연의 존엄성은 (모두에게) 생명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 관리 및 보존하고 자연의 본질적 가치를 전체적인 자연환경 내에서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제2조 제1항** 모든 인간은 자연환경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 질서 또는 도덕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격의 자유로운 성장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제2항** 소유권은 의무를 진다. 동시에 그 사용은 공공의 이익과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19조 제4항** 기본권은 그 성격상 자연에 적용될 수 있는 한 자연에도 적용된다. 자연에는 법적 능력이 있다. 자연은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해 중시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순환, 먹이사슬, 비오톱(Biotope)[18]의 틀 안에서 천부적 존엄성과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 □ 요약 및 시사점

❍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은 당면한 사회문제와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및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개헌 내용 및 관련 논의 동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요약

| 개헌 주제 | 국가 | 주요 내용 |
|---|---|---|
| 기본권 보장 강화 | 프랑스 | •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 강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 및 시민 권리 보호관 신설, 여성의 자발적인 임신 중단 규정 |
| | 스위스 | • 사회권 보장체계 중 가장 핵심적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 |
| | 핀란드 | • 헌법 내 기본권 조항 전면 개정, 특히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보장 권리 명시 |
| 지방 분권 강화 | 프랑스 | • 공화국의 분권화된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단체 간 영향력 행사 금지 |
| | 이탈리아 | •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이외 모든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 |
| | 스위스 | •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명시, 연방과 주 간의 권한 배분 체계화 |
| 기후 위기 대응 | 스위스 | • 글라루스주 및 취리히주 등이 주 헌법에 기후변화와 그 영향의 완화를 위한 노력 규정 |
| | 룩셈부르크 | • 2023년 헌법개정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생물다양성의 보호 명시 |
| | 프랑스 | • 2018년, 2021년 2차례 환경보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개정안 발의 |
| | 독일 | • 시민사회단체인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생태 헌법안 공개 |

❍ 특히, **기본권 보장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여성의 자발적인 임신 중단 규정을, **스위스는** 사회적 기본권인 궁핍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핀란드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지방 분권화를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탈리아는** 국가에 명시적으로 전속된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주 정부에 부여하였으며, **스위스는**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였다.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최근 스위스의 글라루스주 및 취리히주 등과 룩셈부르크는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 중립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헌법**」 및 「**기본법**」 **제1조**에 기후보호 등의 내용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성립(1987년) 후 현재까지 **만 38년 동안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개헌을 위해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한 강한 경성헌법이라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 이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개정 절차의 유연화와 합리화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 등을 헌법에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4년 헌법재판소의 「국민 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도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는 의회의결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핀란드와 독일은 국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로만 헌법을 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국가들의 다양한 헌법개정 절차에 대한 제도와 그 실제 운용 사례** 등은 우리나라의 현행 개헌 절차 내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고 개헌 절차의 개정 여부 및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자료**


-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2025
- 국회도서관,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II, 2025
- 박진애,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19호(통권 제257호), 2024
- 강명원,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4-20호(통권 제258호), 2024
- 井田敦彦,“G20各国における近年の憲法改正【2025年版】”, 国立国会図書館,「調査と情報」第1312號, 2025

#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 간 | 상 임 위 | 주 요 정 책 정 보 |
|---|---|---|
| 6월<br>첫째주 | 농림식품<br>해양수산 | ○'김 육상양식 시대', 바다의 한계를 넘는다! 세계로 뻗어가는 K-김 육상양식의 선도 전략 |
| | 국토교통 | ○데이터 기반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의 개발과 활용<br>○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
| | 과학기술<br>정보방송통신 | ○글로벌 주요 국가의 데이터 시장 현황 및 전략<br>○미·중경쟁 맥락에서 본 AI 글로벌 거버넌스 현황과 전망<br>○주요국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 현황 및 시사점<br>○검색 패러다임의 변화, AI 검색 에이전트의 부상<br>○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가명정보제도 활성화 방안 |
| | 외교통일 | ○트럼프 2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br>○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전망<br>○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신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과제<br>○복합 대북전략과 남북관계의 재구성<br>○미국인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응 전망<br>○미-중 전략 경쟁 속 유럽을 바라보는 중국의 전략적 시각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 | ○한국의 통상외교 2030 :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에 대응하는 3대전략<br>○중국의 핵심 자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파급영향 및 대응책<br>○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탠덤 태양전지<br>○러시아 '에너지 전략 205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br>○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
| | 외교통일,<br>과학기술정보<br>방송통신 |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 기술 외교 전략<br>○북한의 자연재해 특징과 인공위성기술 활용 방안 |

| 주 간 | 상 임 위 | 주 요 정 책 정 보 |
|---|---|---|
| 6월<br>첫째주 | 법제사법,<br>과학기술정보<br>방송통신 | ○EU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년 차의 현안과 시사점 |
| | 국방 |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
| | 문화체육관광 | ○게임의 긍정적 효과와 가치 : 데이터로 다시 읽는 게임산업 |
| | 정보 | ○팽창주의에 기초한 美 우주안보 정책 변화와 시사점 |
| | 법제사법 |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과 법률 및 양형 개선 방안 |
| | 행정안전 |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 : 우리의 성과와 과제 |
| 6월<br>둘째주 | 과학기술정보<br>방송통신 |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 중 화재 취약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대응 방안<br>○싱가포르 AI의 부상과 경쟁 요인 분석<br>○글로벌 AI 모델 동향 및 특징 분석<br>○한·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br>○물리적 AI의 등장과 로보틱스 분야 동향 |
| | 국방 | ○제22회 샹그릴라대화와 인도-태평양안보 |
| | 외교통일 | ○센카쿠열도와 美-日-中 삼각관계<br>○중국의 해양 '법률전'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br>○(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한일 수교 60년 : 공공외교의 현주소와 전략 과제<br>○美 상호관세 및 불법 이민 관련 조치에 대한 중남미의 대응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 | ○미중 무역 분쟁과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br>○중국 혁신 역량의 장기 동향과 시사점 :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br>○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ESG 활성화 방안 연구<br>○경기도 임팩트 투자 현황에 따른 정책제안<br>○대미 무역수지 확대의 요인별 분석 |
| | 환경노동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EU와 유럽 국가들의 경성규범(hard law) 고찰<br>○일하는 법이 달라졌다, 스폿워크(Spot Work)의 부상<br>○생성형 AI 생태계로 인한 경기도 정책 변화 : 일자리 부문을 중심으로<br>○기후변화, 빙하 소실과 기후위기의 도래에 따른 물 재해관리 |

| 주 간 | 상 임 위 | 주 요 정 책 정 보 |
|---|---|---|
| 6월<br>둘째주 | 교육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br>○학령인구 학생은 감소하고, 성인과 유학생은 증가… 달라진 대학 신입생 구성과 대학의 대응 과제 |
| | 기획재정 |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
| | 행정안전 |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해외사례 분석과 정책 시사점 |
| 6월<br>셋째주 | 행정안전 |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br>○농촌 거주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빈집) 활용방안 연구<br>○재난보도 주요 반복 문제의 진단과 개선 과제<br>○배수기능 확보 위한 빗물받이 설치와 유지관리 개선방안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 | ○미·영 무역합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br>○AI 시대가 이끄는 한국 주력 수출 산업 변화<br>○홍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물류 회랑 다변화에의 시사점 |
| | 외교통일 |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 중국의 지역전략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br>○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분석 |
| | 환경노동 | ○경기도 중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연구. 1,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br>○AGI와 노동의 미래 |
| | 보건복지 |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연금자산 분석<br>○응급실 이용 특성 분석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과 추정<br>○OECD 주요국의 전자건강기록(EHR) 정책환경 분석 연 |
| | 과학기술정보<br>방송통신 | ○지속가능한 공공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br>○미국과 한국의 AI 채용 분야 정책 현황<br>○글로벌 사회가 주목하는 AI 현황과 변화 :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AI, AI 인재 경쟁, AI 분야 글로벌 대학 순위 |
| | 법제사법 |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
| | 기획재정 | ○역(逆)성장 탈출을 위한 적극적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2분기) |
| | 환경노동<br>국토교통 |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실현방안 : 감축수단 간 통합적 공간계획 방안을 중심으로 |

| 주 간 | 상 임 위 | 주 요 정 책 정 보 |
|---|---|---|
| 6월<br>넷째주 | 외교통일 | ○한국 신(新)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및 전망<br>○끝나지 않은 분쟁 : 파할감 테러로 본 인도-파키스탄 갈등구조와 시사점<br>○러북의 전략적 밀착과 대응 방안<br>○트럼프 2기 조선업 부흥 정책 및 주요국의 현황 |
| | 보건복지 |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유럽 시장 및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분석<br>○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br>○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 |
| | 산업통상자원<br>중소벤처기업 |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br>○스타트업의 특허 및 상표 패키지 출원과 성장성과의 관계<br>○미국의 산업혁신정책 변화와 우리나라 혁신전략 시사점<br>○글로벌 첨단기술제품(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br>○서울시 지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 국방 |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br>○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 배경과 전망<br>○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br>○EU 2030 방위전략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
| | 행정안전 |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br>○경기도 빈집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br>○경상북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전략 연구 |
| | 정무 | ○금융시장 안정, 환율 변동성 완화부터다! |
| | 과학기술정보<br>방송통신 | ○인공지능의 산업별 혁신 현황 연구<br>○텍스트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의제화 연구<br>○중국과 일본의 데이터 공간(Data Space) 전략 비교 |
| | 교육 | ○독일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현황과 시사점 |
| | 여성가족 | ○디지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성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방안 |
| | 환경노동 | ○서울시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 |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1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의견25-0185, 2025. 6. 13.)

### □ 질의요지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 □ 의견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경기도의회조례”라 한다)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제1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 등”의 용어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는데(제2조제1호가목), 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정무**

**직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정무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규정**하고(제1호가목)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회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분류에 따른 모든 종류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인 경기도의회 의원도 해당 규정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회조례의 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종전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공무원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의 적용대상이었던 **경기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경기도의회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조례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갑질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제10조제2항),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14조제1항),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상급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4조제2항)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조직적·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할 뿐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의장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회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이 갑질 행위자 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징계 등의 조치는 의장이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로서 행하는 조치로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해당 규정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경기도의회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의회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의회 소속 공무원
   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 5. (생 략)

##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의견25-0200 2025. 6. 11.)

### □ 질의요지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에서 포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공기통·호흡기·부력조절기 또는 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재기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 **이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과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시·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제1호)을 고려할 것**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상북도조례안"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장비 기준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다른 형식의 법규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재위임**하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실질적으로 다른 형식의 법규로 정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사무'란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며,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소관 자치사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권한을 주고 있어 해당 기준을 정하는 사무는 시·도의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조례안에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도의 소관 사무를 시장·군수가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시·도의 사무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시·군의 사무로 규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중레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수경, 숨대롱, 잠수복,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및 호루라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중레저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에는 수경, 숨대롱, 잠수복, 잠수모, 오리발, 수중칼 및 호루라기 외에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 및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 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이하 "공기통등"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수중레저법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상북도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공기통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 하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는 **비어업인이 공기통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관하여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기재하는 것에 해당하여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경상북도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려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의 수역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는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장소의 제한**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서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방법·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장소적 범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이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장 및 양식장'의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러한 포획·채취 장소에 관한 기준을 시·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경상북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3조(포획·채취 수역) ① 비어업인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포획·채취 가능 어구·방법·장비) ① 비어업인은 관할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포획·채취 가능 어구·방법·장비 기준 내에서 포획·채취할 수 있다.

② 비어업인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 잠수용 장비(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포획·채취 가능 어구·방법·장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 Ⅵ. 법령 해석 사례

# Ⅵ. 법령 해석 사례

## 1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5-0331, 2025. 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 □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이하 "제3자 통지"라 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1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 이러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러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제2항),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간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제3항) 등 **제3자 통지를 받은 자의 비공개 요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으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및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⑤ (생 략)

## 2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등으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 등 관련) 【법제처 25-0192, 2025. 6. 12., 전라남도 함평군】

### □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3호마목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이하 "편의시설"이라 함)을 마련하여야 하고, 다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목 1)]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이하 "사원경내"라 함)에 해당하는지?

### □ 회답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경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함)를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사설 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

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기 치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4 제3호마목 본문**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에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하고, 같은 목 단서 및 1)에서는 다만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사법령에서는 사원경내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사원경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에는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편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경내란 '일정한 지역의 안'을 의미**하므로, 사원경내는 **편의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리적·공간적으로 해당 사원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이어야 할 것**인바,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계 없이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가 단지 사원 소유이기만 하면 사원경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표 제3호마목 단서에 따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서는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로서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17조제2호에서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으로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규정하면서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법령에서는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의 예외 요건으로서 '경내'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사원의 소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사원경내의 범위가 기존의 사원과 지리적·공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제한 없이 확대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의무규정의 예외가 인정된다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장사법령의 목적(제1조)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족 및 조문객들이 장례의식에 이용할 물품을 갖추어 자연장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승용차 내지 대형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어서 자연장지에의 접근가능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에서 자연장지가 사원경내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원이 갖추고 있는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편의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어도 사원의 소유이기만 하면 사원경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존 사원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자연장지를 방문하는 유족 및 조문객들의 접근가능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경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⑪ (생 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 2. (생 략)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4. (생 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